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제35조제1항 관련)

구 분	검 사 대 상	검 사 주 기	비 고
송전사업자 및 배 전사업자의 송전 및 배전 설비	(1) 가공송전설비	3년	
	(2) 지중송전설비	3년	
	(3) 변전설비	3년	
	(4) 송전·변전 특수설비		
	(가) 초고압직류 송전설비(HVDC)	2년	
	(나) 해저케이블	2년	
	(다) 유연송전설비(FACTS)	2년	
	(5) 가공배전설비	4년	
	(6) 지중배전설비	4년	
	(7) 전기저장장치(ESS)	1년	
	(8) 송전·배전 전력구 구조물	3년	

비 고

1. 자체 검사는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실시한 날(사용전검사를 받지 않는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해당 전기설비의 사용개시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전기설비별 검사주기에 따라 시행하되, 검사주기가 도래하는 해가 속한 12월 31일까지 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주기에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검사 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